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small>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small>
	배포일자	2022년 7월 5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농축산유통과	담 당 자	• 동물보호팀장 김경미 ☎ 440-4376 • 담당자 김도현 ☎ 440-4379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같은 반려견(犬), 동물등록으로 얼굴을 찾아주세요

- 8.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군·구청에 반려견 동물등록해야 -
 -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 ... 9월 1일부터 집중단속 예정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거주지 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犬) 중 1)주택 또는 2)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또한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에는 올해 5월말까지 약 17만9천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9월에는 집중단속 하기로 한 것이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으로 정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 내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군·구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2월부터 고양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범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등록을 원하는 소유주는 내장형 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는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까지 반려견을 반드시 등록해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물의 얼굴을 찾아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사진>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2022 동물등록 차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차진신고 7.1.~8.31.
집중단속 9.1.~9.30.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차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 ❀ 차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된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